##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6327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4. 6. 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4. 9. 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4. 9. 24.) 상정, 심사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양부남의원	2024. 7. 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 위원회 직접 회부('24. 9. 2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 사 제1소위('24. 9. 24.) 상정, 심사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양부남의원	2024. 7. 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 위원회 직접 회부('24. 9. 2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 사 제1소위('24. 9. 24.) 상정, 심사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김태년의원	2024. 10. 3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 위원회 직접 회부('24. 11. 22.)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1. 27.)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 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상의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단서).
- 나.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 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8조의4제1항 후단

삭제).

-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안 제33조제6호의4).
- 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안 제43조제5항).
- 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안 제69조제1호 본문).
- 바.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의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뿐만 아니라 처분제청권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 사. 조사·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징 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

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83조제 4항 신설).

법률 제 호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단서 중 "저소득층"을 "저소득층 · 다자녀양육자"로 한다.

제26조의4제3항 중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을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조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제43조제5항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3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제1항제3 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
- 2.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3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 가.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 나.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

정될 것

제69조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1조제2항제4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권자"를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 청권자"로 한다.

제8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당연히 퇴직한다.
-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 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

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 제3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수사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5조(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방 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대하여 임용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에는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임용된 사람(제1항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술직"을 "과학기술직"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및 제3호 중 "기술직공무원"을 각각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제26조(임용의 원칙)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	
<u>저소득층</u> 등에 대한 채용·승	저소득층·다자녀양육자
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	
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	
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
용 및 수습근무) ①・② (생	용 및 수습근무)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u>수습으로 근</u>	③ <u>공무원을 임</u>
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	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
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	<u>와 과학기술</u>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	
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신규채용) ① (생 략)	제28조(신규채용) ① (현행과 같
	<u>\odots</u>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 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 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 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1. ~ 8. (생략)
-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

<u>제3호부터 제</u>
<u>5호까지, 제7호 및 제11호</u>
1. ~ 8. (현행과 같음)
9
과학기술

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 13. (생략)

- ③ 삭 제
- ④·⑤ (생 략)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 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 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 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 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 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 함하며, 실장 ·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 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 정된 것으로 본다.

	10. ~ 1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	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단 삭제>

② ~ ④ (생 략)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 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3. (생략)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 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

년대상 성범죄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3조(결격사유) ------

>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ᅟ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 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7. · 8. (생략)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 조 충 등) ① ~ ④ (생 략)

⑤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 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 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 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 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 된 사람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 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 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 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 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 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 원을 보충할 수 있다.

<u><신 설></u> <u>1.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u>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 8. (현행과 같음)
에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
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
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신 설>

⑥ (생략)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제69조(당연퇴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 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 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 위해제를 한 때

- 2.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 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3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가.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의 직급 · 직위 또는 상당 계 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 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나.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 (b) (현행과 같음)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 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 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 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 제3호, 「스토킹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 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생	략)
Δ.	( ~ ~ ~ )	47

#### 제71조(휴직) ① (생 략)

-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5. ~ 7. (생략)
- ③ ~ ⑤ (생 략)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① (생 략)
- ② <u>처분권자</u>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제71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u>8체</u>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
<u>자</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

1. ~ 3. (현행과 같음)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등)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